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상법 제542조의4 및 회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 (화)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주)엑셈 7층 V미팅룸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9기(2022.1.1 ~ 2022.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변경 반영, 첨부1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첨부2 참조)

제3-1호 : 사외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3-2호 : 사외이사 공훈의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첨부3 참조)

제4-1호 : 감사위원 이상훈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2호 : 감사위원 공훈의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희선 선임의 건 (신규선임, 분리선출, 첨부4 참조)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명익개서대행회사(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http://ex-em.com>)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금번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첨부5 참조), 신분증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개인/법인)

8. 기타 참고사항

1)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를 고려 및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감염 의심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해 장소 변경이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ir.ex-em.com/electronic_list)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4) 위임장 서식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작일인 2023년 3월 16일(목) 중 당사 홈페이지(https://ir.ex-em.com/electronic_list)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기타 첨부서류

첨부1. 정관 변경(안) 2. 이사 선임 세부 내역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세부 내역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 내역 5. 주주총회 참석장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참석 당일(3월 28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주식회사 엑셈

대표이사 조종암(직인생략)

첨부1. 정관 변경(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38조 (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 (이사의 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u>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u>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자구수정</p>
<p>제40조 (이사회회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략)</p>	<p>제40조 (이사회회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u>이사에게</u>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u>이사 전원</u>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p>	<p>자구수정</p>
<p>제42조 (이사회회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42조 (이사회회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u>이사가</u>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자구수정</p>
<p>제42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보상위원회 ②~③ (생략)</p>	<p>제42조의 2 (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설) 2. 감사위원회 ②~③ (현행과 같음)</p>	<p>위원회 신설</p>
<p>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p>	<p>제6장 감사위원회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u>같음</u>하여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기구 조항 전면 개정</p>
<p>제47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47조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u>감사위원회위원</u>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기구 조항 전면 개정</p>

첨부1. 정관 변경(안) (계속)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48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p> <p>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p> <p>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8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p> <p>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기구 조항 전면 개정</p>
<p>제49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p> <p>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49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p> <p>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기구 조항 전면 개정</p>
<p>제50조 (감사록)</p> <p>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 (감사록)</p> <p>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자구수정</p>
<p>제51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제51조 (삭제)</p>	<p>-</p>
<p>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⑧ (생략)</p>	<p>제53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u>감사위원회</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감사위원회</u>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u>감사위원</u>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자구수정</p>
<p>제5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4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u>감사위원회</u>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선정 규정 변경</p>
<p>-</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제5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부칙 추가</p>

첨부2. 이사 선임 세부 내역 (사외이사 2명, 이상훈, 공훈의)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이상훈	3년	('06.03-현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3.01-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22.09-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 ('21.08-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0.01-'21.12)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5.11.21	신규선임							
공훈의	3년	('21.11-현재) 고도화사회이니셔티브 대표이사 ('18.10-'22.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09.04-'19.09) (주)소셜뉴스위키트리 대표이사/발행인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0.03.13	신규선임							

첨부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세부 내역 (2명, 이상훈, 공훈의)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이상훈	3년	('06.03-현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23.01-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22.09-현재)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1.08-현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 위원 ('20.01-'21.12)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5.11.21	신규선임							
공훈의	3년	('21.11-현재) 고도화사회이니셔티브 대표이사 ('18.10-'22.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09.04-'19.09) (주)소셜뉴스위키트리 대표이사/발행인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60.03.13	신규선임							

첨부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세부 내역(분리선출, 1명, 정희선)

성명	임기	주요약력	추천인	최근 3년 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생년월일	신규선임여부							
정희선	3년	('21.03-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1.03-현재) 캐롯손해보험(주) 사외이사 ('21.03-현재) 한국조세법학회 학술이사 ('19.07-현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 연구 및 회계저널 편집위원 ('20.11-'22.10) 한국공인회계사회 전산정보위원회 위원 ('19.07-'20.06) 삼성 KPMG Scholarship Professor ('16.09-'21.02)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부교수	이사회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979.09.27	신규선임							

정기주주총회 참석장

주 주 명 : (인) 소유주식수 : 주
실명번호 :
회의명칭 : (주)엑셈 제9기 정기주주총회
회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5길 40 (주)엑셈 7층 V미팅룸
일 시 : 2023년 3월 28일 오전 10시

상기 본인은 2023년 3월 28일 (주)엑셈의 정기주주총회 및 그 연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음.

2023년 3월 28일

※ 실명번호란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요망